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상풍력발전사업 공유지분 수익의 이익공유 등〉

■ 용혜인의원·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987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총괄검토	5
가. 제정안의 개관	5
나.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검토	8
2. 조문별 검토	13
가. 제1장 총칙	13
나. 제2장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신청 및 지급	19
다. 제3장 수급자의 사후관리	26
라. 제4장 공유지분 이익배당 특별회계	30
마. 제5장 보칙	34
바. 제6장 벌칙	36
사. 부칙	38

※ 참고자료 41

1. 해상풍력법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41

2. 해상풍력법에 따른 계획입지 추진 절차 4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용혜인 · 민병덕의원 등 19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31.
3. 회부연월일 : 2026.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해상풍력발전이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발전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규정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시행되었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제공, 인허가 편의, 기술·금융·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우대 등 다양한 수준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크기에 비해 공공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고, 특히 풍력, 공유수면 등이 공유부 성격을 지님에도 국민의 직접적인 이익공유 방식이 도입되지 아니함.

이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의 20% 이내 사업지분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개정안에 맞춰 공유지분 수익의 이익공유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로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공유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유지분”, “수급권”, “수급권자”, “수급자” 등 정의 규정을 둠.
(안 제2조).

다.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의 양도, 담보제공, 압류를 금지함(안 제3조).

라. 수급자의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안 제4조).

마. 대한민국 국민, 「지방자치법」상의 주민, 영주권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수급권자로 함(안 제5조제1항).

바. 수급권자의 이익배당액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부터 얻은 당기순이익에서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액수를

수급권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공유지분에 따른 사업이익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 나머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설치 지역의 주민을 수급권자로 함(안 제5조제2항).

사. 공유지분 이익배당은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조례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아. 공유지분 이익배당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공, 지급 신청, 조사·질문, 미지급 이익배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9조).

자.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12조).

차.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하며, 기후에너지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배당액을 징수하여 특별회계에 납입하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이월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해 규정함(안 제13조~18조).

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령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둠(안 제21조~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민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

9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제정안의 개관

제정안은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 참여의 조건으로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20% 이내의 공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공유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¹⁾

제정안은 총 6장 2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조문 구성]

장	조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의 보호
	제4조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소득 산정 특례
제2장 공유지분	제5조	수급권자
	제6조	공유지분 이익배당 관련 정보의 제공

1) 용해인의원·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88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의2(공유지분의 확보) ① ~ ② (생략)

③ 공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장	조	조 제목
이익배당의 신청 및 지급	제7조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 신청
	제8조	조사·질문 등
	제9조	미지급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신청
제3장 수급자의 사후관리	제10조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 정지
	제11조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의 상실
	제12조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환수
제4장 공유지분 이익배당 특별회계	제13조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제14조	공유지분 사업이익의 징수
	제15조	세입
	제16조	세출
	제17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18조	잉여금의 처리
제5장 보칙	제19조	공유지분 이익배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0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6장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장에서는 목적, 정의,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의 보호 및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소득 산정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장에서는 수급권자, 공유지분 이익배당 관련 정보의 제공, 공유

지분 이익배당의 지급 신청, 조사·질문, 미지급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장에서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 정지,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의 상실 및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환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4장에서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공유지분 사업이익의 징수, 세입·세출,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5장에서는 공유지분 이익배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 등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장에서는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며, 부칙에서는 시행일 및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검토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해상풍력발전은 정부주도 계획입지로 추진됨에 따라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입지를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경제성·환경성·수용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발전지구 지정을 거쳐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됨.²⁾

이에 따라 사업자가 입지 발굴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부담 등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 각종 인·허가의 일괄처리에 따른 사업추진 소요기간 단축, 금융·세제 지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특례 등 공적 지원을 토대로 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게 됨.

그런데 최근 해상풍력이 바람이나 공유수면 등 공공성이 강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계획입지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공주도형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발전사업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공적 지원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최근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유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³⁾되었으며, 동 개정안 제18조의2제3항은 공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을 전제로,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조건으로 확보한 공유지분으로부터 발생한 개발이익을 실제로 국민에게 배당하기 위한 지급 및 재정운용 체계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공유함으로써 해상풍력 개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988호)

제18조의2(공유지분의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유지분(다만, 최대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국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비율, 지분의 형태,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정안의 전제가 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지분 제공”은 사업자의 기대 수익을 감소시켜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금융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며, 그 부담이 발전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쟁력 및 보급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우려는 해외 사례에서도 일부 나타난 바 있는데, 덴마크의 경우 지난 2024년 제정안과 유사하게 3GW 규모의 대규모 입지 입찰에 낙찰된 경우 지분 20%를 국가에 제공하는 조건을 두었으나 모두 유찰되었고, 이후 2025년 입찰부터 지분 국가 공여 조건이 철회된 바 있음.⁴⁾

또한, 현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바람과 공유수면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관 협의회를 통해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도록 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지역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국가가 공유지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4) “Failed offshore auction highlights how Denmark missed winds of change”, Reuters, '24.12.7.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위촉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지역 수용성을 저해시켜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해상풍력발전사업의 보상 및 지역 환원 관련 주요내용]

분 류	주요내용	법적근거
어업피해 보상	· 해풍사업에 의해 제한, 정지, 취소되는 어업권 보상	「토지보상법」, 「수산업법」
송전선로 주변지역보상	·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재산적 보상, 주택매수 청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인근 지역 지원	
지역상생 발전기금	· 이익 일부를 지역발전·주민복지에 활용 (사례:제주 풍력자원 이익공유화 기금)	조례 또는 지자체-사업자간 약정
지역협력사업비	· 주민설명회, 갈등관리, 지역협력사업 등 관련 비용 부담	지자체-사업자간 약정 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제정안은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특정한 재원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는 예외적인 재정운용방식이라는 점에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추가적으로, 제정안은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수급권자를 전 국민으로 설정하면서, 지급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제도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공유지분 이익배당은 공공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확보한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체계와 유사하게 설계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유지분을 국가에게 양도하여 전 국민에게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제성과 지역 수용성, 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업계의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풍력산업협회는 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공유지분을 제공하여 이익을 징수하는 경우 총사업비 상승 및 발전단가 인상과 해상풍력사업 투자 위축 및 보급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조문별 검토

가. 제1장 총칙⁵⁾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공유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규정함.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유지분”, “수급권”, “수급권자” 및 “수급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공유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지분”이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획득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일정 지분을 말한다.
2. “수급권”이란 공유지분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3. “수급권자”란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수급권에 따라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5) 제정안은 22개 조문을 제6장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 대해서는 장 구분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제1장 총칙”을 입안 과정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임.

동 제정안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⁶⁾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법률안으로, 해당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유지분을 국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의2(공유지분의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유지분(다만, 최대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국가에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비율, 지분의 형태,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이에,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공유지분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6) 용해인의원·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88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의2(공유지분의 확보) ① ~ ② (생략)

③ 공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안 제2조제1호는 “공유지분”이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획득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일정 지분이라고 규정함.

그런데 동 제정안의 전제가 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지분”을 “이 법에 따라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제공, 인·허가 절차의 지원 등 공공자원을 지원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획득하는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일정 지분”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동일한 개념에 대하여 법률 간 정의를 달리 규정할 경우 법 적용 및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체계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해상풍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유지분”이란 이 법에 따라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제공, 인·허가 절차의 지원 등 공공자원을 지원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지분”이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획득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일정 지분을 말한다.

획득하는 해당 해상풍력발전사업 의 일정 지분을 말한다.

다음으로, 안 제2조제2호는 “수급권”을 공유지분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권리로, 안 제2조제3호는 “수급권자”를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을 가진 사람으로, 안 제2조제4호는 “수급자”를 수급권에 따라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받은 사람으로 각각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 제정안에 따른 공유지분에 대한 수급과 관련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2조제2호의 “수급권”을 가진 자가 이익배당을 받으면 “수급자”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개념을 구분하여 정의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므로, 정의 규정을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의 보호 및 소득 산정 특례(안 제3조 및 제4조)

안 제3조는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이 법에 따른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3조(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의 보호)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4조(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소득 산정 특례) 이 법에 따른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의 양도나 담보 제공 및 압류를 제한하고,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⁷⁾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유지분 이익배당이 수급권자에게 지속적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배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이익 환원 및 주민 이익공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3조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양육수당이나 기초연금 수급권 등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을 갖는 급여에 대하여 양도·담보제공·압류 등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⁸⁾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

7) 「국민기초생활 보호법」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이전소득

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에 대해서도 사회보장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다음으로, **안 제4조**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실질적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이익배당금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충성의 원칙⁹⁾ 및 타 소득과의 형평성¹⁰⁾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에 대해서만 소득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 타 법령 및 제도와의 형평성, 재정의 효율성¹¹⁾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에 대해서만 소득산정을 제외하는 것은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 타 법령 및 제도와의 형평성, 재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8)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을 받을 권리”,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 등 사회보장급여 성격의 급여에 한하여 양도나 담보제공 및 압류 등을 제한하고 있음.

9)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모든 자산과 소득을 우선 활용한 후 최저생활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10)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타 법령에서 지급하는 정기적인 수당·금품 등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함.

11)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미 보장받고 있는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자에 대한 추가 지원보다는,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제도 밖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임.

나. 제2장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신청 및 지급(안 제5조~제9조)

(1)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자(안 제5조)

안 제5조는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자를 대한민국 국민과 실거주민으로 하고, 수급권자의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을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부터 얻은 당기순이익에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한 액수를 수급권자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공유지분 이익의 70%는 국민에게, 30%는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귀속하게 하는 등 수급권자 및 이익배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수와 수급권자의 이익배당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으로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을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5조(수급권자) ① 공유지분 이익배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급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2조의 주민에 해당하는 자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실거주민”이라 한다) ② 수급권자의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유지분이 있는 해상풍력발전

제 정 안

사업으로부터 얻은 당기순이익에 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한 액수를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단, 이 법에 따른 국가 공유지분 이익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이익배당액은 국민에, 나머지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이익배당액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귀속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 수급권자의 수,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이익배당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으로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을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산정, 지급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조는 국가가 취득한 공유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국민과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주민에게 배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5조제1항**은 공유지분의 수급권자를 대한민국 국민 전체(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등 실거주민 포함)로 적용하고 있는데, 공유지분은 특정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는 것임에도 이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 배당하는 방식을 채택할 정책적 필요성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²⁾

참고로, 1GW당 공유지분 이익배당 규모를 약 260억원으로 가정할 때,¹³⁾ 2040년까지 해상풍력법에 따라 상업운전이 이루어지는 해상풍력 발전의 누적규모를 10GW로 가정하면 공유지분 이익배당 총액은 약 2,600억원으로 산출되며, 2040년 국내 추정 인구를 약 5,000만명으로 가정한다면 1인당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은 연간 약 5,200원 수준으로 나타남.¹⁴⁾

한편, **안 제5조제2항**은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유지분이 있는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부터 얻은 당기순이익에서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한 액수를 전체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중 70%는 국민에게, 30%는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여하는 지방 주민에게 귀속시키도록 하여 지역주민에게 지급하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고자 함.

다만, 그 배분비율을 7:3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견이 제기되고 있고,¹⁵⁾ “민관협의회 구성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2) 풍력산업협회는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유지분을 제공하여 이익을 징수하는 경우 총사업비 상승 및 발전단가 인상과 해상풍력사업 투자 위축 및 보급 지연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13) 전남해상풍력(약 0.1GW 규모)의 2025년 당기순이익: 약 160억원(DART)

한림해상풍력(약 0.1GW 규모)의 2025년 당기순이익: 약 100억원(DART)

→ (가정) 평균 130억원/0.1GW × 20%(공유지분비율) = 260억원/GW

14)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15) 참고로, 강원도는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어민과 송전선로 신설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역상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 대한 이익배당률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또한, **안 제5조제4항**은 시·도지사 등은 연 2회 정기적으로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을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재원인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조례를 통해 지급 방법을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달리 규정하는 경우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급권자의 범위가 국민과 영주자격을 지닌 외국인으로 너무 광범위하고, 수급권자의 수가 너무 많아 의미있는 규모의 이익공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2) 공유지분 이익배당 집행절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안 제6조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수급권자에게 공유지분 이익배당지급의 대상·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안 제7조는 수급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유지분 이익배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는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신청자에게 수급권 발생 등을 확

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공유지분 이익배당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가 미지급된 이익배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6조(공유지분 이익배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공유지분 이익배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 신청) ① 수급권자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지분 이익배당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사·질문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공유지분 이익배당 지급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 정 안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공동지분 배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미지급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신청) ①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공유지분 이익배당이 있는 경우에 수급권자는 미지급된 이익배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청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신청, 조사,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급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대리인을 통한 지급 신청을 허용하는 등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집행절차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8조는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출입국자료, 시설 입·퇴소에 관한 자료, 매장·화장·장례에 관한 자료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다. 제3장 수급자의 사후관리(제10조~제12조)

안 제10조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하며, 안 제12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수급한 경우 환수하도록 하는 등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0조(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 정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해까지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2.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공유지분 이익배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정 안

제12조(공유지분 이익배당의 환수)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이익배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1. 거짓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라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이익배당이 지급된 경우 등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정지·수급권 상실·환수 등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유지분 이익배당 제도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임.

다만, 안 제10조제1항제3호는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공유지분 이익배당 지급을 일률적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 따른 공유지분 이익배당은 국가가 공공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회보장급여와는 성격이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외 체류를 이유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 동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11조**는 수급권 상실 사유로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및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망 또는 국적 상실의 경우 수급권 종료 사유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권 상실 사유”는 국민의 재산적 권리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부정수급 또는 오지급된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제도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안 제12조제2항**은 환수금이 소액이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서 환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환수금 면제가 국가채권의 포기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판단 기준 등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액의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에 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익배당 관리는 막대한 행정부담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임.

라. 제4장 공유지분 이익배당 특별회계(안 제13조~제18조)

안 제13조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익을 징수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규정함.

안 제15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을 공유지분 사업이익 징수액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규정하고, 안 제16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을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으로 인한 지출로 규정함.

안 제17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¹⁶⁾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8조는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함.

16)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제14조(공유지분 사업이익의 징수) 기후에너지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익을 징수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1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4조에 따른 공유지분 사업이익 징수액 2. 그 밖의 수입금
제16조(세출) 특별회계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으로 인한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공유지분 사업이익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이익의 징수부터 배당 지급까지의 재정운용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원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국가재정법」 17)은 국가의 세입과 세출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17)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른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은 공유지분의 사업이익으로, 세출은 공유지분 이익배당으로 구성되는 단순한 구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회계를 통한 운영보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나 재원의 목적 외 사용 방지 측면에서 실질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하여 추진 중으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공유지분 이익공유 추진에 따른 사업축소 우려와 해상풍력사업에 따른 세입과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세출의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 신설 요건¹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임.

18)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기획예산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공유지분 사업이익 징수 및 이익 배당이 「국가재정법」상 특별회계 신설 요건에 비추어볼 때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특별회계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마. 제5장 보칙(안 제19조~제20조)

안 제19조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유지분 이익배당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공유지분 이익배당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9조(공유지분 이익배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공유지분 이익배당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지분 이익배당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안 제19조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에 관한 자료의 처리 및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른 수급자 관리, 이익배당 지급, 지급정지 및 환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 제2장 및 제3장은 공유지분 이익배당의 지급 등을 위하여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출입국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¹⁹⁾ 동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범위 및 보호조치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안 제20조는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지분 이익배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짐

다만, 일반적으로 「정부조직법」이나 행정법에서는 행정기관간 권한 이전은 “위임”²⁰⁾으로,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에 사무를 맡기는 경우 “위탁”²¹⁾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행정기관간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법상의 권한 위임·위탁 체계에 비추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9) 예를 들어 안 제8조는 수급권의 발생·변동·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 자료,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매장·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 자료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 행정권한 자체를 다른 행정기관에게 이전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 수임기관이 자기 명의로 책임으로 행사하며, 처분의 주체가 수임기관이 됨.

21) 행정권한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사무의 집행만 다른 기관에게 맡기는 것으로, 권한은 원래 행정청에 있고 수탁기관은 맡은 사무를 수행하며, 처분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탁기관에게 있음.

바. 제6장 벌칙(안 제21조~제22조)

안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22조는 공유지분 이익배당 지급을 신청한 자의 수급권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지분 배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21조 및 제22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지급받거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

고 공유지분 이익배당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안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지급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위의 위법성과 법익 침해 정도에 비추어 처벌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안 제2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료 제출의무 이행 확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성에 비추어 과태료 수준이 의무이행을 담보하기에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유지분 이익배당액을 고려하여 벌칙과 과태료 부과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사. 부 칙

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별표1에 제25조를 신설하여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도록 규정함.

[제정안 조문]

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에 다음과 같이 제25호를 신설한다.
25.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먼저, 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정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방식은 법률의 내용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또는 법률의 내용이 단순한 정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동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가에 공유지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라는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

하고, 세부적인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다음으로, 안 부칙 제2조는 제정안을 통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부칙을 통하여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면서도 법률 개정 시차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나,

제정안의 경우, 「국가재정법」상에 “공유지분 이익배당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닌 실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부칙에 의한 타법 개정 방식보다는 「국가재정법」을 직접 개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 및 국가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유지분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보다는 기존 주민참여사업 체계 안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3

□ 추진 경과

- 총 9개 의원발의안* 중 7개안이 병합심사되어 '25.2.27일 본회의 통과
- * (병합) 국김소희, 민허종식, 민김원이, 조서왕진, 국강승규, 국조경태, 민김정호 / (계류) 민정진욱, 국박성환
- 국무회의 의결('25.3.18) 및 법률 공포('25.3.25) ⇨ '26.3.26일 시행 예정

□ 주요 내용

- (거버넌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위원장: 총리, 민간위원 1인) 및 실무위원회(위원장: 기후부 차관)를 신설하며, 위원회 지원을 위한 부처합동 사무국(해상풍력발전추진단) 설치
- (입지발굴) 해상교통·어업·군작전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입지를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예비지구 중 환경성, 주민수용성, 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 발전지구 지정
- (사업자선정 및 인허가 의제) 발전지구내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사업자는 실시계획(2년 내 제출)을 제출하여야 함, 실시계획 승인 시 공유수면허가, 전기사업허가 등 28개 법령의 42개 인허가 사항 일괄 의제 처리
 - (기존 사업자 처우) 전기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기존의 전기사업법 체계에 따라 사업 추진 가능하며, 계획입지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적정한 기준 충족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 가능
- (산업진흥) 기술개발, 인력양성, 실증단지 조성 등 해상풍력 산업진흥 및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제도·금융 등 지원방안 마련 근거 규정

참고 2

해상풍력법에 따른 계획입지 추진절차

절 차	주 체	법 률 내 용
① 입지정보망 운영	기후부 +해수부	풍황, 환경, 어업활동, 해상교통, 군사작전 등 정보 구축 (법 제12조)
② 예비지구 지정	기후부 +해수부	해상풍력이 가능한 후보지역 선정 (법 제14조)
③ 기본설계 수립	기후부	기본설계 수립·확정 (법 제16조)
④ 환경영향조사	기후부	해양·환경적 영향조사 등 실시 (법 제16조 제3항)
⑤ 민관협의회 협의	지자체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익공유 (법 제17조)
⑥ 발전지구 지정	기후부	사업성, 계통 확보 후 발전지구 지정 (법 제19, 20조)
⑦ 발전사업자 선정	기후부	발전사업자 선정·취소 기준 (법 제24조)
⑧ 실시계획 제출	사업자	해상풍력 실시계획 작성·승인 등 (법 제25조)
	환경성평가	사업자 사전 환경성평가 실시 (법 제26조)
⑨ 인허가 의제처리	기후부	28개법 인허가 의제 처리 (법 제27조) * 전기사업법, 공유수면법 등
⑩ 착공 신고	사업자	착공신고(공사계획인가)(법 제30조)
⑪ 준공 인가	사업자	준공인가 신청(법 제31조)